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 회 의 명 : 제41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 회의일시 : 2017. 11. 27.(월) 14:34

□ 장 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 참석위원 : 이효성 위 원 장
허 욱 부위원장
김석진 상임위원
표철수 상임위원
고삼석 상임위원 (5인)

□ 불참위원 : 없 음

제41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 14시 34분 개회 】

1. 성원보고

- 이효성 위원장
 - 차중호 의안·정책관리팀장 성원 보고해 주십시오.
- 차중호 의안·정책관리팀장
 - 재적위원 전원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 국기에 대한 경례

- 차중호 의안·정책관리팀장
 -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3. 개회선언

- 이효성 위원장
 - 2017년 제41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지난 회의록 확인

- 이효성 위원장
 - 제40차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을 확인하고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회의록과 속기록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의하신 대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4-1. 국회에서 요구한 속기록 제출 의결 관련

○ 이효성 위원장

- 국회에서 2017년도 제40차 전체회의의 속기록 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 공개 안건의 속기록은 동의 의결절차 없이 제출하되, 인사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비공개로 진행한 「기타 현안에 대한 논의사항」의 속기록을 발언 위원의 성명, 개인 신상에 관한 사항 등을 음영처리한 후 열람형식으로 제출하는 건에 대해 위원님들, 동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자료제출을 의결합니다. 다만, 인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이 진행 중인 상태이므로 공개하면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제출시기에 대하여는 저에게 위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동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5. 회의공개 여부 결정

○ 이효성 위원장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4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안건들을 공개로 심의하는데 위원님들, 동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회의는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심의를 들어가기 전에 장내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 의결사항

가. 포항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수신료 면제에 관한 건 (2017-41-240)

○ 이효성 위원장

- <의결사항 가> ‘포항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수신료 면제에 관한 건’에 대하여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보고해 주십시오.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은 방송법 제64조와 방송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10호에 따라 포항지역 지진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시청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수신료를 면제대상 및 기간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면제 대상은 멸실 또는 파손된 주택 및 건물에 설치된 수상기로 포항시의 시장, 구청장으로부터 피해사실을 확인받은 세대의 수상기이며, 면제기간은 2개월로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11월 15일 발생한 포항 북구 지역 지진과 관련하여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포항시 내의 피해자에 대한 수신료 면제를 의결하기 위함입니다. 관련 법령 및 면제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련 법령은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방송법 제64조 및 동법시행령 제44조제1항제10호에 의거 방통위가 지정하는 수상기에 대해 수신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인한 TV

수신료 면제는 2000년 이후 10차례 자연재난, 1차례의 사회재난에 대한 수신료를 면제한 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검토사항입니다. 수신료 면제 필요성입니다. 방송법 제64조 및 동법시행령 제44조에서는 공공의 이익과 복지를 위하여 저소득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을 TV수신료 면제대상으로 열거하고 있는 취지를 고려할 때, 지진피해 세대에 대해 수신료 면제를 적용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판단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면제대상인 지진 피해세대는 관련 관청의 실태파악 후 확인되며, 한전의 특별재난지역 지원기준에 의거 전기료 감면세대와 동일한 세대에 대해 수신료 감면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면제기간은 과거 특별재난선포지역의 피해가구에 대한 수신료 면제 사례와 지진피해세대수, 총 예상되는 수신료 면제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개월로 정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보고드린 내용을 의결해 주시면 즉시 KBS에 공문을 송부해서 피해가구에 대한 수신료 면제가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위원님들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말씀하십시오.

○ 허 욱 부위원장

- 수신료 면제는 금액은 소액이지만 방송통신위원회가 법령상 허용된 범위에서 할 수 있는 행정행위로서 포항 시민들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아울러 보고드릴 사안은 방송통신위원회도 지난 20일에 KBS 본관 시청자광장에서 진행된 포항 지진 피해 성금모금 특별생방송에 사무처 직원들과 위원님들이 함께 모금한 성금을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전달한 바 있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다른 위원님들 더 말씀하십시오. 김석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러면 KBS가 실태조사를 해서 대상이 구체적으로 몇 가구가 되는지를 KBS가 결정하는 것입니까?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결정은 기본적으로 피해가구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포항시청과 북구청에서 하게 될 것이고, 그것에 따라서 한전과 KBS가 전기료와 수신료 면제가구를 확정해서 통보하게 되는 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전기료는 한 달만 감면이지요?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빠르면 다음 달부터 바로 감면혜택을 받게 됩니까?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시기도 아마 한전과 동일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알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방송법 제64조의 동법시행령 제44조에서 공공의 이익과 복지를 위하여 저소득층,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을 TV수신료 면제대상으로 열거하고 있는 취지를 고려할 때 지진피해 세대에 대해 수신료를 면제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므로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포항 지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세대가 빨리 회복되기를 염원드리며, 수신료 면제가 피해 세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나. 2017년도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에 관한 건 - (주)매일방송 (2017-41-241)

○ 이효성 위원장

- <의결사항 나> ‘2017년도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보고해 주십시오.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은 ‘2017년 11월 30일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주)매일방송에 대해 <붙임 1>과 같이 조건 및 권고사항을 부가하여 재승인하고, 승인유효기간은 ‘17년 12월 1일부터 ‘20년 11월 30일까지로 한다’입니다. 제안이유는 2017년 11월 30일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주)매일방송에 대한 재승인을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경과사항을 간단히 보고 드리면 ‘16년 8월 11일 「‘17년도 종편·보도PP 재승인 세부계획」을 의결하였고, ‘17년 5월 30일 (주)매일방송이 재승인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17년 11월 8일부터 10일까지 재승인 심사위원회를 운영하였습니다. 심사위원회 구성·운영입니다. 「‘17년도 종편·보도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세부계획」에 따라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구체적으로 심사위원장 및 분야별 전문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하였고, 상세한 내용은 재승인 심사위원회 구성 현황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심사평가 결과입니다. 심사 결과 총점 1,000점 중 651.01점을 획득하여 재승인 기준을 충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만, 심사사항 중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의 이행 및 방송법령 등 준수여부’는 총점 100점 중 37.06점을 획득하여 과락에 해당합니다. 참고표를 보시면 재승인 기준은 재승인 세부계획에 따라 1,000점 만점 중 650점 미만이면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가 가능하며, 650점 이상일지라도 공적책임,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

항목이 배점의 50%에 미달한 경우 조건부 재승인 및 재승인 거부가 가능하고, 개별 심사사항의 평가점수가 배점의 40%에 미달한 경우에도 조건부 재승인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MBN의 경우는 마지막에 말씀드린 개별 심사사항의 평가점수가 배점의 40점에 미달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 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견입니다. 먼저 방송의 공적책임 및 공정성·공익성과 관련해서는 오보·막말·편파 심의제재 건수가 기타 종편3사에 비해 적은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보도 프로그램에 대한 불만건수가 2014년 9.9%에서 2017년 46.4%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은 보도 프로그램 편파성에 대한 불만 해소 노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조화로운 편성과 관련해서는 뉴스·시사논평·버라이어티쇼·다큐멘터리 등 4개 장르가 매년 96.5%~96.7%를 차지할 정도로 편성이 집중된 점을 해소하기 위해 탐사보도, 교육·문화·예술, 영화 등 기타 장르의 편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또한 재방편성 계획을 신청서에 약 47%로 제시하였으나 사업자 의견청취 시 40% 초반대로 낮추겠다고 답변한 점을 감안, 40% 초반의 구체적 수치를 다시 제출받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콘텐츠 산업발전에 대한 기여 여부 관련으로는 재승인 시 약속한 콘텐츠 투자 계획을 준수하지 못했으며, 향후 3년간 콘텐츠 투자계획도 종편사 중 가장 적은 액수로 나타나 콘텐츠 투자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그 외 심사 항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영·재정·기술적 능력과 관련해서는 협찬은 방송의 공익성을 해할 우려도 있는 점을 감안하여 협찬 수익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한 수익이 프로그램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당초 승인 시 약속한 일자리 확대 취지에 부응하고, 방송의 사회적 책임을 고려하여 채용인원 확대에 노력하고 계약직·파견직 등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더 적극적으로 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방송발전 지원 계획 및 방송법령 등 준수와 관련해서는 MBN의 자체적인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외주제작사의 제작에 필요한 경비를 적정하게 지불하도록 하고, 외주제작사 선급금 지급을 위한 내부 기준을 정립하는 한편, 저작권 및 방영권 등 수익배분에 있어 외주제작사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검토 의견입니다. 방송법령 및 재승인 기본계획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심사평가 결과와 심사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총점 1,000점 중 재승인 기준점수인 650점 이상을 획득하였으나 과락항목이 있으므로 '조건부 재승인'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사업 계획 및 추가개선계획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조건과 함께 '외주사와의 상생방안' 등에 대한 별도 조건을 부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주)매일방송에 대한 주요 재승인 조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의 공정성·공익성, 공적책임 확보를 위해 사업계획서 및 추가개선계획에서 제시한 방송프로그램의 품격제고 계획을 철저히 준수할 것. 전년도 이행실적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하는 양식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단, '18년은 6월 30일까지 별도의 중간보고서를 제출할 것. 다음 방송심의규정 제9조, 제13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 제14조, 제27조제1호, 제2호 및 제5호, 제51조 위반으로 인한 법정제재를 '14년 4건, '15년 2건, '16년에 3건을 받아 방송의 품격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2018년부터 재승인 유효기간까지 매년 4건 이하로 유지할 것. 다음 보도·교양·오락 등 다양한 방송분야 상호 간에 조화를 이루도록 편성하고, 장르별 다양성 제고를 위해 뉴스, 탐사보도, 시사논평, 토론·대담 장르 프로그램을 합산하여 2018년부터 사업계획서에 제시한 비율 이내로 편성할 것. 전년도 이행실적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하는 양식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

할 것. 다음 방송프로그램 재방비율을 추가개선계획에서 제시한 비율 이내로 편성할 것. 전년도 이행실적은 매년 1월 31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다음 방송 프로그램의 품질 향상과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해 추가개선계획에서 제시한 연도별 콘텐츠 투자금액 이상을 준수할 것. '콘텐츠 투자금액'은 재승인 후 3개월 내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하고, 전년도 콘텐츠 투자이행실적은 매년 4월 30일까지 회계법인의 검증을 받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외이사 및 감사제도 개선 등 경영의 전문성, 독립성, 투명성 확보 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재승인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출하고, 매년 3월 31일까지 이행실적을 제출할 것. 마지막으로 사업계획서 및 추가개선계획에서 제시한 외주제작사와 상생방안을 반드시 준수하고, 외주 프로그램 제작비 산정 및 지급, 저작권 및 수익배분 등에 관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준수할 것. 전년도 이행실적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하는 양식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승인유효기간은 심사위원회 심사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사업자 간 경쟁을 유도하는 한편 심사의 절차적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17년 12월 1일부터 '20년 11월 30일까지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입니다. 오늘 보고드린 내용을 의결해 주시면 11월 말 승인장 교부 그리고 재승인 심사 결과 및 시청자 의견 반영 여부를 공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8년 3월까지 재승인 백서를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허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허 욱 부위원장

- MBN은 지난 '96년부터 방송을 해 온 경제보도 전문PP로서 종편PP 4개사 중 방송의 공적 책임 의식이 잘 정립되어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서 유감입니다. 과거 독립PD 폭행사건 등 과거 행태는 물론 이번 심사과정에서의 허위 자료 제출 사례 등을 볼 때 MBN은 방송의 공적책무에 대한 상당한 정도의 각오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매일방송의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이행 및 방송법령 등 준수 여부 심사 항목에서 37.06%의 과락의 점수를 얻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조건부 재승인의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국장님, 종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승인 및 재승인 심사를 할 때 중점적으로 어떤 것을 심사합니까?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두 번째 종편 재승인 심사에서는 첫 번째는 품격 있는 방송프로그램 그리고 조화로운 프로그램의 편성 그 부분과 콘텐츠의 적절한 투자, 이를 통한 시청자에 대한 보호 이 부분이 중점 심사사항이었습니다.

○ 허 욱 부위원장

- 그런 것을 담아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것이지요?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그렇습니다.

○ 허 옥 부위원장

- 사업계획서의 성격은 무엇으로 봐야 합니까?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사업계획서는 향후 재승인 유효기간 동안 사업자가 이행할 계획이고, 저희와 국민에 대한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 허 옥 부위원장

- 결국 사업계획서가 승인 및 재승인을 얻기 위해 자신들이 약속한 법적인 자기 구속력을 지닌 일종의 인가 문서라고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심사의견서에 보면 재승인 조건 및 권고 사항 이행에서 연도별 이행실적 점검 시 재승인 조건에 대한 이행실적이 미흡했다는 평가를 받아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는 등 재승인 조건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결국은 심각하게 재승인해 주어야 할 것이냐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 심사위원들의 의견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방송의 공적책임 및 공정성 이행방안 콘텐츠 투자 그리고 재방비율을 낮추겠다, 외주사와 상생방안을 담은 방송발전계획 등을 제출했습니다. 많이 개선 계획안을 냈는데 그러나 재승인 조건으로 제시한 계획의 철저한 준수가 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무처가 이행실적을 중점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쪽 다 검토한 가운데 협찬 운영 및 관리 부분의 개선을 꼼꼼히 점검할 것을 주문하는데 이번에 이 부분에 관해서 주로 지적 나온 부분은 어떤 사항입니까?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협찬과 같은 경우에는 방송의 공익성을 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협찬수익의 투명성을 확보 하고 수익이 프로그램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 허 옥 부위원장

- 이번 재승인 심사 때 협찬 리스트나 품목별 협찬내용을 요청했었는데 자료 제출요구에 응하지 않았지요?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제출을 프로그램별로 얼마 협찬을 받았는지는 제출했고, 다만 그 협찬을 어디로부터 받았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 허 옥 부위원장

-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영업비밀이라는 이유였습니다. 계약서에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밝힐 수 없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 허 옥 부위원장

- 방송광고와 달리 협찬은 방송사에 직접 영업이 가능하고 규제의 사각지대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법적인 규제 근거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영업비밀이라고 할 때 우리가 이것을 타사에 유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적절한 규제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법적 근거 신설 이전이라도 협찬수익에 대한 투명한 회계관리 방안 마련이 권고가 됐는데 협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프로그램별, 협찬주별로 또한 협찬 내역별로 현황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관련 자료를 방통위에 제출하도록 실행방안에 담아 주기 바랍니다. 또한 협찬 유치와 집행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협찬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의 내실화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사후 감독도 철저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MBN이 제출한 추가 개선계획에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고 저희가 실적을 매년 받아서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표철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표철수 상임위원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종합편성이라는 방송 자체가 처음 승인될 때부터 굉장히 의미를 가진 것이고 또 사회적으로 공익적인 일을 확실히 하도록 한 것인데 가장 기본적으로 재방 비율이 47%라는 것은 그 책무를 지극히 망각한 것이라고 봅니다. 뒤집어 이야기하면 프로그램 제작에 투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재승인과 관련해서 이것을 부관으로 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향후 이것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조차도 저는 여전히 미흡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해당 사가 여기에 제출한 계획보다도 더 좋은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계속 지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야 종편4사가 현재 상태로 서로 상대가 어떻게 하는지 정도를 보고 거기에 맞추어 가는 구조로는 안 된다, 지금 종합편성에 가장 가깝게 방송을 하는 사가 한 사가 있지요. 그런 구조로 좋은 쪽으로 계속 따라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부관은 확실하게 지키도록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방송이 기본적으로 독립성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독립성이라는 것이 소유와 경영이 분리가 되어야 기본적으로 가능한데 이사, 감사제도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부실하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개선하도록 하는 것은 분명히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외주제작사와 관계, 어느 사나 이것은 비단 종편뿐만 아니고 결국 지상파도 문제이고 다 문제입니다. 상생방안과 관련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하는 기준을 준수한다고 돼 있는데, 우리가 어떤 기준을 제시할 것인지 표현이 예를 들면 표준계약서가 아니라면 그것이 마땅치 않은 표현이라면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하는 협약서 같은 형태 이런 표현도 한번 검토해 보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 더 여쭙 보겠습니다. 재승인 세부계획에 따르면 개별 심사 항목의 평가점수가 배점의 40%에 미달한 경우에도 조건부 재승인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개별 심사사항의 40%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사회에서 통용되는 것은 과락을 정할 때 대충 60점 아래가 과락이 많습니다. 그런데 방송이라는 특성이 사회적인 책임, 공적인 책임이 굉장히 강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개별 심사사항이

평가점수가 40%, 이것이 기준이 맞는지 저는 아무리 안 돼도 50%는 되어야 한다, 40%라는 기준 자체가 너무 약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미 종편이 승인된 지 시간이 꽤 지났습니다. 그리고 종편은 경영도 상당히 개선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공적인 책무를 더 확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하고, 과거에 이렇게 해 왔다는 관행 때문에 계속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것은 제4기 방송통신위원회가 정책목표 중에서 개선해서 고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허가·재승인이라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역무가 가장 중요한 역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송사업자들이 일단 사업권을 획득하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해마다 반드시 지켜야 할 공적인 책임, 사회적인 책임을 신장시키고 강화하는 쪽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역할을 분명히 해야 한다, 그런 것을 이번 기회를 통해 다시 말씀드리고, 이번에 이 부관들은 확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분명하게 계속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알겠습니다.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2015년도에 재허가·재승인 관련된 기본계획을 의결해서 그 기본계획에 따라 쭉 그동안 재허가·재승인을 진행해 왔고, 올해 MBN 재승인 그리고 다음 주쯤 의결하게 될 지상파 재허가가 끝나면 그 기본계획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다 한 것입니다. 그동안에도 기본계획과 관련해서 지적들이 있었고,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다음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보다 더 방송사의 공적책임을 제고할 수 있는 기본계획이 마련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지금 점수가 651점 나왔습니다. 지난 3년 전에 재승인 심사할 때 MBN이 몇 점 나왔지요?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704점 받았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700점이 넘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낮게 나온 이유가 뭐니까?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일단 지난번 '14년 재승인 이후에 제출했던 사업계획서에 약속했던 내용들을 많이 이행 못했던 부분들이 크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앞서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MBN 같은 경우 경제채널로 20년 이상 방송해 왔습

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심사위원회에서 넘긴 다음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승인 불허에
준해서 사실상 추가 심사를 했지요?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예.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렇게 봐도 되는 것이지요?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방송평가위원회 방송평가를 제외하고 제가 100점 기준으로 환산해 봤습니다. 두 번째 방송의
공적책임 210점 배점에 122점이면 58% 득점했습니다. 세 번째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190점 배점에 106점이면 이것은 55.8% 득점했습니다. 네 번째 경영·재정·기술적 능력은 100점
배점에 58점이기 때문에 58% 득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방송발전에 대한 기여 부분은 과락을
맞았습니다. 사실상 방송평가 점수가 없었다면 이것은 불허지요? 그렇게 봐야 합니까?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점수가 낮게 나왔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검토하면서 논의했습니다만 마지막 안건에 올라 와 있는 방송평가가
과연 제대로 정확하게 방송 운영에 대한 평가수단으로서 타당성이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MBN이 보여준 점수는 대단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의 인식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지 않았습시다만 추가 개선사항에 나왔던 2가지 정도를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심사의견도 있었습시다만 공정성 논란, 보도의 객관성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특히 공정성 시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해서 MBN 측
에서 제출한 개선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해 주십시오. 읽어주시지요.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일단 생방송 시사프로그램 출연자가 법정제재를 받을 경우에 영구적으로 출연을 정지시킨다는
내용이 있었고, 진행자로 인해 법정제재를 받았을 때 1회는 내부 징계, 2회는 교체, 타 종편
에서 법정제재로 출연정지 조치를 받은 진행자와 출연자는 MBN에서도 동일하게 출연정지,
3회 법정 제재 시 프로그램 폐지, 방송 후 일별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 및 보고를 통해서 소속
정당 이슈별 균형 준수, 주 월간단위 출연자 비율 검증, 타사 언론사 기자들의 출연 확대,
출연자 심의위원회의 논의 및 의결내역 홈페이지 공개, 출연자 심의위원을 언론 관련 학회
등 공신력 단체 추천을 통해 위촉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제가 이것을 다 확인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저희 위원님들께서 안건 심사를 아주 짧게 하시니까 MBN에 대한 심사과정이 아주 무난했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전 과정에 대해 핵심적인 것을 짚어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MBN 같은 경우 지난번 재승인 심사 이후에 콘텐츠 투자금액과 관련해서 현재 소송 중이지요?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소송하고 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왜 소송을 하고 있습니까?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MBN 쪽의 입장은 성실하게 콘텐츠 투자계획을 이행하라고 했고, MBN은 나름대로 어려운 방송환경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이행했기 때문에 성실하게 이행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금액을 100% 이행하느냐, 이행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입장이 달랐다는 것이지요?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 고삼석 상임위원

- 이번에 추가적으로 의견청취하는 과정에서 MBN 대표이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콘텐츠 투자 금액과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밝혔지요?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이번에 약속한 투자계획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100% 이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100% 이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제가 이것을 말씀드린 이유는 재승인 조건이나 권고사항에 없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오늘 심결하는 과정에서 명확히 해 두고자 하는 취지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표철수 위원님께서 종편의 소유와 경영의 분리에 대해 언급하셨고 여기에 보면 지금 재승인 조건으로 부과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논의과정을 잠깐 말씀드리면 종편이나 지상파방송사나 편성 측면에서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예, 오히려 종편이 보도 부분이 높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문제의식을 가졌던 것은 뭐냐 하면 지상파에 대해서는 지상파 특히 지역 민방들까지도 소유와 경영의 분리 문제, 특히 보도·제작에 대해서는 대주주들이 관여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는 조건 내지는 권고사항을 부과합니다. 그런데 종편에 대해 특히 보도프로그램을 많이 편성하는 종편들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한 번도 소유와 경영의 분리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제4기 위원님들께서는 종편의 소유와 경영분리에 대해서 처음으로 문제제기를 심각하게 하신 것입니다. 지금 논의과정에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지 않지만 종편의 소유와 경영분리 문제, 특히 보도에 대해 대주주가 관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명확한 내부적인 원칙을 수립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번에 저희가 검토했다는 것을 아울러 밝혀드립니다.

○ **이효성 위원장**

- 김석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석진 상임위원**

- 앞서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도 많은 부분 같은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몇 가지만 강조하고자 합니다. 여기 심사위원들의 심사의견을 보면 보도프로그램의 편파성에 대한 불만이 매우 높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3년 전에는 9.9% 정도 보도프로그램에 대한 불만건수가 그것밖에 안 됐는데 3년 뒤 지금은 46.4%로 급증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개선 노력이 아까 과장님 말씀이 출연자 1진 아웃제, 진행자가 한번 징계를 받으면 내부징계를 하고, 두 번째는 아예 교체한다, 법정제재 3번 이상 받으면 아예 프로그램을 폐지한다 이런 개선책을 내놓았습니다. 타 종편에 비해 수준이 어느 정도로 평가할 수 있습니까?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채널A 쪽보다 약간 더 센 것 같고, TV조선보다 약한 수준입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결론적으로 저는 종편들이 지금까지 해 온 방송들을 보면 초창기 진입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제작비를 적게 들이기 위해 출연자들이 대거 그렇게 해서 시간을 메우는 식의 생방송 시사 토크 프로그램을 많이 진행해 왔습니다. 심지어는 보도전문채널과 별 차별이 없어 보인다는 이야기까지 혹평을 듣고 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정말 이번 온 국민을 진영대결로 편 가르기 하는 이런 지나친 과도한 정치뉴스, 또 거기에 대한 분석은 이제 제발 그만하고 정말 종편답게 그렇게 편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잘 들여다보고 행정지도를 해야 한다고 강조해 둡니다. 두 번째는 편성입니다. 편성도 다양한 편성이 되지 못해서 심사위원 의견을 보면 뉴스·시사논평·버라이어티쇼·다큐멘터리 등 4개 장르가 전체 편성비율의 97%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해소됐는지 짚막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재방비율 가지고 설명하시는 것이지요?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저희가 일단 재승인 조건으로 뉴스, 탐사보도, 시사논평, 토론·대담 장르에 대해서는 사업계

혹서에서 제시한 이행비율대로 이행을 맞추도록 했습니다. 심사위원회에서 지적하신 부분은 버라이어티쇼나 다큐멘터리 부분의 비중이 높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이 MBN의 중점 프로그램, 강세를 보이는 프로그램들이 그쪽에 많기 때문에 MBN이 그런 쪽 위주로 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에는 지금보다는 개선되게 다양한 장르의 프로그램을 편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제출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행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특히 한 가지만 확인해 둘 것이 자체제작 드라마가 전혀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드라마를 한다고 합니까?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드라마 편성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제출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래서 과거 초창기부터 쪽 MBN 같은 경우 경제채널로서 방송을 오랫동안 해 왔습니다. 그래서 종편을 허가받았고 종편을 시작했다면 이제 5년 지났으니깐 종편답게 해서 드라마도 하고 그리고 특화할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경제분야는 특화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데 타 종편과 똑같이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저도 청문과정에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잘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표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이사와 감사 그 부분이 심사의견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감사 2명 중 1명이 매경미디어그룹 부회장이고 또 대주주 매경신문사의 특수관계자이고 사외이사 3명 모두 비방송업종의 기업 회장이라는 점에서 방송의 전문성, 경영의 투명성, 독립성 확보를 위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재승인 조건에 들어가 있습니까?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조건에 포함시켰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한번 읽어 주십시오.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다시 한 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의결안건 7페이지 보시면 맨 위쪽에 '사외이사 및 감사제도 개선 등 경영의 전문성, 독립성, 투명성 확보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재승인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출하고, 매년 3월 31일까지 이행실적을 제출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최초로 이것을 확인하는 과정이 언제 들어옵니까?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저희가 오늘 의결하면 2개월 이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 1월 중에는 개선계획이 제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철저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이효성 위원장**

- 우선 MBN은 과거의 보도전문채널로서 오랫동안 해 왔기 때문에 아까 허 욱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종편보다는 그 경험을 살려서 더 잘해 줄 것으로 기대했는데 사실 그 기대에 부합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조금 더 근본적으로 MBN 재승인 절차를 통해서 우리가 방송사들의 재승인·재허가 과정을 더 엄격하게 새롭게 평가기준을 가지고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방송평가위원회에 의해서 평가점수가 나오는데 이것이 변별력이 너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 여기에서 변별력이 있었다라면 MBN은 낙제점 점수가 나왔을 가능성이 큰데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를 다시 다듬어야 할 것 같습니다. 공정성·공익성, 방송발전 기여도 이런 것 따지는 부분에서도 우리가 좀 더 새롭게 엄격한 기준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그런 차원에서 제4기 방송통신위원회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방송사는 방영권만 갖고 제작자가 저작권을 갖는 이 시스템을 정착시켜서 방송계가 상생할 수 있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 방송을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 같습니다. MBN에도 조건으로 제작사와의 관계, 제작비를 제대로 지급하라는지 이런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부분을 재승인이나 재허가 시 크게 반영해서 이것들이 제대로 정착되고 우리 방송 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게 앞으로 신경을 더 많이 써야 하고 재승인·재허가 과정을 근본적으로 검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 같습니다.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매듭을 짓고 가기 위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표철수 위원님께서 과락제도를 말씀하셨는데 일괄적으로 주요 심사항목에서 50점만 넘으면 과락이 아닙니다. 그것이 과연 타당한 커트라인 이냐 이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부분들은 좀 더 커트라인을 높게 설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은 종편사업자 등 방송사업자에게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이것을 50점만 넘으면 통과되는 것으로 한다는 것은 너무 기준을 낮게 잡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도 해 봅니다. 이 안건이 의결되면 제3기 방통위에서 마련한 종합편성사업자 심사 기본계획에 의한 1차 심사가 다 끝나는 것이지요?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렇기 때문에 제4기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편들에 대해 재승인할 때에는 다시 기본계획을 마련

해야 합니다. 그때는 앞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방송평가제도가 평가척도로서 타당성을 갖도록 개선함과 동시에 종편들의 심사평가 기준들, 과락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한번 재검토해서 위원들께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이 앞으로 제4기 위원회에서 재승인·재허가 안을 마련할 때는 철저하게 새로운 방향에서 변별력이 제대로 드러날 수 있도록 평가도 하고, 그다음에 개별 과락점수에 대해서도 적절한 수준으로 다시 재조정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제4기 위원회 재승인·재허가 기준안을 마련할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다.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엠비엔미디어랩) 재허가에 관한 건 (2017-41-242)

○ **이효성 위원장**

- <의결사항 >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엠비엔미디어랩) 재허가에 관한 건’에 대하여 김동철 방송기반국장 보고해 주십시오.

○ **김동철 방송기반국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입니다. ‘(주)엠비엔미디어랩을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로 재허가한다. 재허가 심사위원회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붙임 1>과 같이 재허가 조건과 권고사항을 부과한다. 재허가 유효기간은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허가 만료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을 하고자 재허가 신청한 (주)엠비엔미디어랩에 대한 재허가 여부를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경과입니다. 2016년 10월 20일 재허가 기본계획을 의결해서 종편미디어랩 4개사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17년 3월 JTBC미디어랩·TV조선미디어랩·미디어랩A 각각 랩에 대한 재허가 의결을 한 바가 있습니다. '17년 8월 (주)엠비엔미디어랩이 재허가 신청을 했고 그에 따라 '17년 11월 14일부터 15일까지 재허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심사위원회 구성·운영입니다. 첫째 구성은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재허가 기본계획」에 따라 심사위원장을 포함하여 법률, 경제·경영, 회계, 방송, 광고 등 5개 분야 전문가 11인으로 아래와 같이 구성하였습니다. 이 중 심사위원장을 포함한 3인은 지난번 3월에 심사에 참여했던 위원들을 포함시켜서 심사의 일관성을 유지하였습니다. 운영에 관한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엠비엔미디어랩은 100점 만점 기준 총점이 71.568점, 각 심사사항별로 60점 이상을 획득하여 모두 재허가 기준을 충족하였습니다. 다만, 법률요건 심사결과 주주인 (주)한진칼(14.29%)의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소유제한 위반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주)한진칼은 지주회사·대기업

집단으로 지주회사 지분 소유금지, 대기업 집단 10% 초과 소유금지 관련 규정을 위반, 현재 행정처분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심사사항별 심사평가 결과는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심사위원회 주요 심사의견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재허가 심사 결과, (주)엠비엔미디어랩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한 재허가 기준을 충족하였습니다. 다만, 종편랩 3사 공통 재허가 조건 및 권고사항을 동일하게 부여하여 재허가 심사 및 광고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심사에서 중점적으로 지적된 방송광고판매 금지행위 방지 대책, 경영의 투명성·독립성 확보 방안, 소유제한 위반 등의 사항을 추가적인 조건으로 부과하여, 향후 5년간 방송광고 시장의 공정 경쟁 및 공익성 실현, 광고산업 발전 등의 계획 이행을 담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세부 심사의견 주요 내용입니다. 방송광고판매 금지행위 위반에 따른 시정조치 계획과 최초 허가 시 제출한 공익성·공정성 이행 실적이 미흡하여 개선 방안 마련 및 (주)엠비엔미디어랩과 (주)매일방송의 이행의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타 사에 비해 법령 위반사태가 많은 점을 고려하여 임직원 교육, 내부 규정 정비 등 업무 프로세스 개선과 교육 내실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대 주주 (주)한진칼의 소유제한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와 함께 (주)엠비엔미디어랩의 주주 관리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경영 투명성 및 독립성 확보 계획의 이행실적이 미흡함에 따라 공정한 이사회 운영과 독립적인 감사 선임 등 사외이사 및 감사제도 개선 계획을 제출할 필요가 있다. 향후 5년간 매출액 추정이 과거 운영실적 및 광고시장 성장률 대비 실현 가능성이 낮음에 따라 세부 구성내역, 산출근거 등에 기반한 자금조달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 방송 및 광고산업 발전 지원사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사업 규모, 방식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정책 건의사항입니다. 종편PP의 방송광고 증가 등 매체 영향력을 감안하여 미디어랩에 대한 재허가 심사기준 및 배점 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현행 미디어랩의 허가유효기간 5년을 방송사업자와 같이 3년에서 5년으로 부여하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고, 방송 및 광고산업 발전 지원 사업은 종편 미디어랩사 공동으로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건의하였습니다. 방통위의 검토 의견입니다. 재허가 여부입니다. 법령 및 재허가 기본계획에 따라 실시한 재허가 심사위원회 심사 평가 결과와 심사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주)엠비엔미디어랩은 재허가 기준을 충족함에 따라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방송광고판매대행사사업자로 재허가하고, 허가유효기간은 최초 허가기간 만료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그러면 (주)엠비엔미디어랩의 구체적인 허가기간은 2017년 12월 1일부터 2022년 11월 30일까지 되겠습니다. 다만, 심사위원회 심사의견을 반영하여 재허가 조건과 권고사항을 부과하고 향후 중요사항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이행결과를 점검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허가 조건 및 권고사항(안)입니다. 기본방향입니다. '17년 3월에 재허가한 종편랩 3사의 공통 재허가 조건 및 권고사항을 동일하게 부여하고, (주)엠비엔미디어랩 재허가 심사 시 중점적으로 지적된 방송광고판매 금지행위 위반 관련 재발방지대책, 방송광고판매 관련 제반 법규 위반 방지대책, 소유제한 위반 관련 주주 관리 대책, 경영 투명성 및 독립성 확보 방안, 매출액 추정 등 자금조달계획 등을 추가하여 재허가 조건으로 부과하고자 합니다. 세부 내용입니다. <붙임 1>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허가 조건 및 권고사항입니다. 먼저 재허가 조건입니다. (주)엠비엔미디어랩 및 최다주주인 (주)매일방송은 방송광고 판매를 목적으로 방송프로그램의 기획·제작·편성 등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이의 준수를 담보할 수 있는 이행각서를 재허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각 법인의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출할

것. 다음 (주)엠비엔미디어랩은 최다주주인 (주)매일방송의 부당한 경영 간섭 방지와 '15년 9월 방송광고판매 금지 위반관련 재발방지대책 등 방송광고 판매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 재허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출하고, 매년 반기별 이행 실적을 반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할 것, 향후 방송광고판매 관련 제반 법규 위반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프로세스 및 임직원 교육 내실화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재허가일로부터 2개월 이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출하고, 매년 3월 말까지 이행실적을 제출할 것. 주주의 방송 광고판매대행사업자 소유제한 위반 관련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재허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출하고, 매년 3월 말까지 이행실적을 제출할 것. 미디어 환경 및 광고시장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영업 등 전문 인력 확보 및 조직 운영 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재허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제출하고 매년 3월 말까지 이행 실적을 제출할 것, 사외이사 및 감사제도 개선 등 경영의 투명성 및 독립성 확보 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재허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출하고, 매년 3월 말 까지 이행실적을 제출할 것, 다음 페이지입니다. 또한 합리적 광고 시장 전망에 기반한 향후 5년간 매출액 추정 등의 자금조달 계획을 수립하여 재허가일로부터 2개월 이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출하고, 매년 3월 말까지 이행실적을 제출할 것. 방송 및 광고산업 발전 지원 사업의 규모, 방식, 추진체계 등에 대한 구체적 개선 계획을 마련하여 재허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제출하고, 매년 3월 말까지 이행실적을 제출할 것. 재허가 조건과 권고사항 및 재허가 심사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계획서의 중요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얻을 것, 다음 권고사항입니다. 공익광고 제작, 광고 관련 조사·연구 등 방송 및 광고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방송광고 판매대행사업자 간 공동 수행 방안을 마련할 것, 이 사항이 재허가 조건 및 권고사항이었습니다. 향후 일정입니다. 오늘 의결해 주시면 11월 말까지 재허가장을 교부하고 내년 1월 말 재허가 조건 관련 이행계획 접수 및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붙임> 재허가 조건 및 권고 사항(안), 두 번째 재허가심사위원회 심사의견서, 세부 심사평가항목 및 배점, 관련 법령 및 고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표철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표철수 상임위원

-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쭙 보겠습니다. 정책 건의사항에 보면 미디어랩 허가유효기간이 5년으로만 규정되어 있는데 재허가조건 이행사항이 미흡하거나 중대한 법령 위반 때 허가유효기간 단축 등 불이익 방안이 없지 않습니까? 이것을 3년에서 5년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실무진 생각은 어떻습니까?

○ 김동철 방송기반국장

-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 건의사항을 받아들여서 기간을 단축할 사업자들이 있을 경우에는 단축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표철수 상임위원

- 그것이 좋은 방안인 것 같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허 옥 부위원장

- 심사의견서에서도 경영의 투명성과 독립성 확보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지적을 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여전히 그렇지 않다는 사례를 하나 소개하고자 합니다. 올해 10월 23일자 매경미디어그룹 인사 보도자료를 보면 매일방송 승진자 명단에 미디어랩 대표 국장대우 양현승이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보도내용을 보면 매일경제신문, 매일방송, 매경닷컴, M-Print 각 사별로 승진 및 전보 인사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디어랩사 대표이사의 승진 인사를 매일방송 승진 인사에 포함시켜서 발표했습니다. 즉, 엠비엔미디어랩은 MBN의 자회사이긴 하지만 법령에 의해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경영의 독립성이 보장된 독립된 사업자인데 MBN은 미디어랩사를 여전히 내부 광고국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방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2015년에 언론에서 유출된 엠비엔미디어랩의 영업일지 사례 잘 알고 계시지요?

○ 장봉진 방송광고정책과장

- 예.

○ 허 옥 부위원장

- 협찬을 받고 보도프로그램에 영향을 준 사례, 모 은행에서 추가 요청받고 은행상품만 집중 소개하는 기획기사의 방송사례, 예능프로그램 협찬을 받았으나 실제 홍보는 보도의 일종인 경제프로그램에서 기사 형태로 노출한 사례, PPL 가지고 만든 예능프로그램이 끝나자마자 모 홈쇼핑 채널에서 판매되는 사례, 프로그램 출연자들이 모두 협찬주인 사례 등 협찬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방송프로그램에 영향을 주는 많은 사례가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통위가 제재를 했는데 그러면 그 이후 나아졌느냐? 현실은 별로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2016년 종편PP 사업자별 방송광고 및 협찬매출 비중을 보면 방송광고 대비 협찬매출 비중이 TV조선은 102.3%, 채널A가 83.9%, MBN이 68.2%입니다. 21.2%인 JTBC를 제외한 종편 pp 3사는 방송광고 대비 협찬 영업 비중이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따라서 이에 관련된 적절한 대응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이 협찬규제에 대한 근거를 신설한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지요? 핵심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 김동철 방송기반국장

- 협찬에 대한 정의를 방송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그다음에 협찬을 방송사들이 받을 때 준수해야 할 사항, 그리고 협찬을 받으면 안 되는 사항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법에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 허 옥 부위원장

- 협찬은 그동안 사적 자치에 맡겨온 측면이 있는데 협찬 의존도가 높은 제작 현실을 고려해서 협찬의 기본원칙과 필수불가결한 금지를 중심으로 규제될 수 있도록 사무처에서 법안이 구

체화되는데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추가로 국장님, 방통위 민원실 내 방송광고불공정행위신고센터가 설치되어 있지요?

○ 김동철 방송기반국장

- 예, 설치되어 있습니다.

○ 허 옥 부위원장

- 현재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 장봉진 방송광고정책과장

-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허 옥 부위원장

- 제가 알아보니 이 신고센터가 종편미디어랩사 설립 때 광고를 직접 판매해 온 종편PP사들이 미디어랩사를 설립한 뒤에도 약탈적인 광고영업을 계속하지 않을까 우려해서 시장 감시 기능을 부여하고자 만든 센터로 알고 있는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고 또한 활용도 많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센터의 존재와 시장 감시 기능에 대해서 광고 등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고, 익명성 보장 기능을 강화해서 내부자신고로 험찬 시장이 정화될 수 있도록 신고센터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 김동철 방송기반국장

- 알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원래 방송광고불공정거래행위신고센터는 지난번 종편미디어랩 최초 승인 시 그때 당시 야측 추천위원들이 그것을 통과하는 조건으로 위원회 사무처에 설치하는 것이었습니다. 방송광고정책과 밑에 설치한 것인데 언제 그것을 민원실로 옮겨 놓았지요?

○ 장봉진 방송광고정책과장

- 그것은 확인해 봐야 할 텐데 방송광고정책과에 했다가 아마 민원실로 통합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운영되는지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이것이 운영이 잘 안 돼서 그때 한번 더 지적을 했던 것입니다.

○ 장봉진 방송광고정책과장

- 저희 과에 그 업무가 남아 있지는 않은데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과 입구에 간판을 붙여 놓았지 않습니까?
- 장봉진 방송광고정책과장
 - 알고 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것을 점검해 보십시오.
- 장봉진 방송광고정책과장
 - 알겠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원래 취지가 있었는데 운영이 유명무실해지니까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 김동철 방송기반국장
 - 알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표철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표철수 상임위원
 - 짧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부위원장님께서 언급하시는 가운데 특정 제품, 주로 건강기능식품들이 많습시다만 홍보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면 홈쇼핑에서 파는 사례들이 전에 있었다고 하시는데, 지금 현재는 그런 제품을 방송하고 있는데 바로 옆에 홈쇼핑에서 그 제품을 팔고 있습니다. 그것은 종편들이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심사위원님들도 의견을 냈습시다만 이것이 시청자들의 불만사항입니다. 고쳐 주어야 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라. 2016년도 방송평가 결과에 관한 건 (2017-41-243)

- 이효성 위원장
 - <의결사항 라> ‘2016년도 방송평가 결과에 관한 건’에 대하여 김동철 방송기반국장 보고해 주십시오.
- 김동철 방송기반국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입니다. ‘2016년도 방송평가 결과를 <붙임>과 같이 의결한다’

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방송법 제31조 및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방송사업자가 2016년도에 실시한 방송의 내용·편성·운영 영역에 대한 평가결과를 의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방송평가 개요입니다. 평가 기간은 2016년도 전 기간이 되겠습니다. 평가 대상은 총 157개 사업자로서 재허가·재승인 대상인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및 보도·종합편성 홈쇼핑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 경과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016년도 방송평가 특이사항입니다. 방송평가규칙 부칙 제45호에 따라 2016년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에 대한 방송실적 분은 개정 전 방송평가규칙과 세부기준을 적용하고, 2016년도 7월부터 12월까지 하반기 방송실적분은 개정된 방송평가규칙과 세부기준을 적용하였습니다. 다만, 연간 실적을 반영해야 하는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개정 전·후의 규칙과 기준을 적용하여 각각 평가하였습니다. 평가결과 발표는 개정 전 기준에 따른 '16년도 상반기 평가결과와 개정 후 기준에 따른 '16년 하반기 평가결과를 각각 발표하고, 재허가·재승인 심사에 방송평가 결과가 반영되는 것을 고려하여 상반기와 하반기의 결과를 산술평균하여 도출된 최종 방송평가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년도 방송평가 결과입니다. 지상파방송사업자입니다. 먼저 지상파TV는 900점 만점입니다. 전체 순위는 KBS1(1위), MBC(2위), SBS(3위), KBS2(4위) 순이며 전년과 비교하여 전체적으로 총점이 상승하였고, 순위 변경이 있었습니다. 심의규정 준수, 편성규정 준수 항목에서 전년 대비 감점이 적었으며, 어린이 프로그램 편성실적의 증가 등으로 평가점수가 상승하였습니다. 도표 안에 있는 그래프는 900점 만점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가 되겠습니다. KBS1입니다. 어린이 프로그램 편성 항목에서 전년대비 30점이 상승하는 등 총점이 30점 상승하였습니다. MBC는 심의규정 준수 항목에서 전년대비 6점이 상승하고, 편성규정 준수 항목에서 30점이 상승하는 등 총점 44점이 상승하였습니다. SBS는 심의규정 준수 항목에서 전년대비 13점, 편성규정 준수 항목에서 20점이 상승하는 등 총 33점이 올랐습니다. KBS2는 편성규정 준수 항목에서 전년대비 8점이 상승하고 어린이 프로그램 편성 항목에서 7.5점 상승, 주시청시간대 편성 항목에서 15점이 상승하였습니다. EBS는 자체심의 항목에서 전년대비 10점이 하락하고, 수상실적 항목에서 3점이 하락하는 등, 총점이 19점 하락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역민방 TV입니다. 전체 순위는 KBC광주가 1위를 하였고, JTV전주, TBC대구, OBS경인, UBC울산, JIBS제주, KNN부산, CJB청주, TJB대전, G1강원 순입니다. 총점입니다. KBC광주, JTV전주, OBS경인, KNN부산은 전년대비 점수가 상승하였고, TBC대구, UBC울산, TJB대전, G1강원은 전년대비 하락하였습니다. 지상파 라디오입니다. 총점이 500점입니다. AM 분야에서는 KBS 1위 그다음 순위가 MBC, SBS, KBS2 순이며, FM 분야는 SBS가 1위 그리고 MBC, KBS2, KBS1 순으로 평가결과가 나타났습니다. AM에서는 KBS1이, FM에서는 SBS가 1위로 상승하여 순위가 변동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상파 DMB TV입니다. 만점이 500점입니다. 지상파 계열은 MBC가 1위, 그다음으로 KBS, SBS 순이며, 비지상파 계열은 한국DMB, 유원미디어, YTN DMB 순으로 평가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지상파 계열의 경우, MBC가 수상실적, 심의규정 등 전년대비 총점 13점이 상승하였습니다. 비지상파 방송사업자 분야입니다. 종편 PP입니다. 700점 만점이고, 전체 순위는 JTBC가 1위를 하였고 TV조선, MBN, 채널A 순으로 나타나 전년과 비교해 2위와 3위의 순위가 변동하였습니다. 심의규정 준수, 편성규정 준수 항목 등에서 전년대비 감점이 적어, 모든 사업자의 총점이 상승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도도 PP 분야입니다. 500점 만점입니다. 연합뉴스TV와 YTN 모두 총점이 상승하면서, 근소한 차이로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심의규정

준수, 편성규정 준수 항목 등에서 전년대비 득점이 상향되어, 모든 사업자의 총점이 상승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위성방송·MSO 분야입니다. 만점이 550점에서 500점으로 줄었습니다. MSO의 경우 모두 총점이 하락하였으며, 전체 순위는 CJ헬로비전, 티브로드, 현대 HCN, CMB, 딜라이브 순입니다. 전년 대비 배점의 축소로 인해 전체 총점이 하락하였습니다. 배점의 축소를 고려하면, CJ헬로비전, 티브로드, 딜라이브 경우, 인적투자, 방송법 준수 등에서 점수가 상승해 총점이 상승하였습니다. KT스카이라이프 역시 배점이 축소되면서 전년대비 총점이 하락하였고, 유통상 공정거래 항목에서도 전년대비 8.5점 하락하였습니다. 홈쇼핑 PP 분야입니다. 500점 만점입니다. 전체 순위는 GS SHOP, 롯데홈쇼핑, 현대홈쇼핑, CJ오쇼핑, NS홈쇼핑, 홈앤쇼핑 순입니다. 롯데홈쇼핑은 총점이 상승하였으며, CJ오쇼핑과 홈앤쇼핑은 하락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처음으로 방송평가를 받았던 2개의 데이터홈쇼핑 사업자인 K쇼핑과 쇼핑앤T의 경우 총점이 크게 상승하였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입니다. 오늘 의결해 주시면 평가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방송법 제17조에 따라 방송사 재허가, 재승인 심사 시 평가결과를 일정 비율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붙임> 2016년도 상반기 방송평가 결과 점수표, 하반기 점수표 그리고 세 번째 2016년도 상·하반기 방송평가 결과 산술평균 점수표를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표철수 위원님께서 심사위원장이시기 때문에 먼저 말씀해 주시지요.

○ 표철수 상임위원

- 아까 앞에 안건 처리하면서 위원장님이 편성 평가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방송 전체를 평가하는 것이 재허가·재승인에 40%가 반영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영역입니다. 그런데 이번 방송평가를 함에 있어서는 작년의 기준이 상반기와 하반기가 나뉘어서 따로 적용되었습니다. 그 점이 특이한 점이고, 기존 정해진 대로 대입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이번 방송평가 과정에서 심사위원들이 특별히 따로 감점하는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이번에 평가해 보면서 드러난 문제점이 있는데 공정성 관련 자율제도를 구축했다, 이렇게 하면 이것은 형식적으로만 구축해도 무조건 가점이 되었기 때문에 심의규정을 위반해서 일부 감점이 되더라도 이런 것이 다 가점이 되면 감점된 부분이 자동 해소가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편성영역에서 편성규정을 준수한 여부에 대해 배점이 30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점수 배분이 다른 데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더 높일 필요가 있겠다는 심사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표준계약서를 활용하거나 가이드라인을 잘 실행했는지 여부 이런 것들도 형식적으로 되어 있어서 항목을 보다 구체화해서 점수에 변별력이 있도록 해야겠다, 이런 여러 가지 건의사항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4기 방통위가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 여러 요소들이 손을 봐야 할 곳이 많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잘 판단해 주시면 워크숍 같은 형태를 통해 전문가와 지난번에 평가 심사하셨던 분들 그리고 위원장님 이하 위원들, 우리 실무진 이렇게 해서 더 좋은 방안을 도출해서 이것이 실제 재허가·재승인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만큼 그에 대해서 합목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런 기준을 더 강화해서 만드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효성 위원장

-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4기 위원회에서는 방송평가를 좀 더 엄격히 변별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승인·재허가가 조금 제대로 엄격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저희가 필요하다면 충분히 그것을 논의할 수 있게 워크숍을 통해서든지 무엇을 통해서든지 할 수 있게 나중에 준비해 주시고 적절한 시점에서 제4기 위원회 재허가·재승인을 위한 방송평가위원회 평가점수라든지 기타 다른 기준들을 보다 엄격하게 마련할 수 있게 그런 작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주시지요.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허 욱 부위원장

- 표철수 위원께서 굉장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2016년도 총점이 전체적으로 상승했습니다. 점수가 상승했다는 의미를 무엇으로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됩니까?

○ 김동철 방송기반국장

- 점수가 상승한 분야가 주로 제재조치를 덜 받은 것에 기인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제재받은 것이 주로 감점대상인데 제재건수 자체가 두 기관이 모두 작년에 많이 줄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방송사업자들이 일부 노력해서 나아진 것도 있다고 볼 수도 있고 제재건수가 줄어 들은 것은 아직 정확한 원인은 잘 모르겠습니다.

○ 신종철 편성평가정책과장

-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표철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평가한 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 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3회 이상 제재를 하거나 기간이 길면 위반횟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가중처벌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반면에 작년에 평가기간이 1년이 아니라 사실상 반반으로 6개월밖에 안 되기 때문에 평가 감점이 줄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총점이 올라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이가 있는 것이 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 특이하게 올해가 상·하반기가 나누어 있다 보니까 평가항목 부분의 점수배분이 바뀌고 또 점수가 바뀐 배분이 있는 항목들이 서로 중첩되면서 또 끌어올린 효과를 나타냈기 때문에 올해는 조금 예외적으로 점수가 올랐다고 판단되고, 정상적으로 내년에 한번 더 이 평가제도를 운영해야 작년에 바뀌었던 사안들에 대해 효과가 정확히 분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는 과도기라고 판단됩니다.

○ 허 욱 부위원장

- 조금 전에 설명해 주신 대로 어떤 면에서 보면 제재조치를 덜 받아서 점수가 상승한 것이지 점수가 올랐다고 프로그램 질이 좋아졌다는 의미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방송평가 결과가 나오면 마치 특정 방송사업자들 간에 순위가 뒤바뀐 것 자체가 굉장한 노력을 해서 된 것처럼 잘못 오인되는 측면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YTN과 연합뉴스TV 간의 차이는 0.1 차이인데 순위가 바뀌었다고 굉장한 것처럼 했는데 막상 안으로 들어가면 제재를 덜 받았든가 아니면 어린이프로그램이 일부 삭제됐든가 아니면 재난방송을 일부 했든가 법 준수를 조금 더 했든가 이런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마치 대단한 노력으로 방송프로그램의 질이 높아진 것처럼 오인되는 것은 해소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이효성 위원장

-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YTN과 연합뉴스TV는 점수 차이가 0.1이 아니고 0.01 차이입니다. 그것은 정확히 해야 합니다. 다시 반복되는 이야기일 수 있는데 위에서부터 뒤까지 <표>를 다 보십시오. 모든 사업자들이 학점으로 말하면 기본 B이고 또 절반 이상이 B+입니다. 이 그림만 보더라도 지금 현재 방송 평가 제도가 변별력이 없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확실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철 방송기반국장

- 예, 알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김석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석진 상임위원

- 저도 앞에서 다른 위원님들 말씀에 전폭 동감합니다. 우선 방송평가제도의 불합리한 부분을 빨리 개선해야겠다는 생각이요, 특히 배점 평가항목을 바꾸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4기 과제로 워크숍을 통해서 중지를 모아 주기를 저도 희망합니다. 우선 이것을 보니까 생각나는 것이 언론들의 관심은 순위가 눈에 들어올 것입니다. 우리 정책 목표는 물론 순위를 공표함으로써 서로 자극이 되고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는 바람직한 측면도 있지만 아까 변별력이 없다고 다들 다른 위원님들 지적대로 그렇다면 순위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보도전문채널은 0.01 정도 차이로 순위가 오락가락 하기 때문에 우리 언론들은 전부 순위가 바뀌었다면 바로 자사 홍보에 또 열중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순위가 바뀌어서 특 떨어졌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분석을 우리가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언론에서도 그런 점에 주목을 해서 관심을 가지고 언론들이 그렇게 해야만 방송평가에서 이렇게 되면 점수가 떨어졌구나 해서 경각심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부각될 수 있도록 순위만 자꾸 부각되니까 그것을 문제점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특히 배점 중 하나 보면 어린이프로그램에 대한 평가항목이 있던데 어린이 프로그램을 편성했다는 이유만으로 순위가 바뀐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너무 지엽적인 것에 의해서 순위가 엇치락뒤치락되는 것이 아닌가, 빨리 시급히 이런 평가항목과 배점을 빨리 시정해야 한다는 말씀에 의견을 보태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더 이상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7. 기 타

○ 이효성 위원장

-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는 이것으로 마쳤습니다. 다른 논의사항 있으십니까?

○ 김석진 상임위원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김석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석진 상임위원

- 지난주에 감사원이 KBS 이사진의 법인카드 사용내역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저도 그 내용을 받아봤습니다. 또 정말 무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내용을 보면 주로 야권 이사들에게 조사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인상이 강합니다. 야권 이사 2명은 특히 소명 못한 내역이 본인들 말로는 10만원 안팎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기억을 못하면 무조건 사적인 사용이라고 분류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사용내역 조사는 이사 전원이 크고 작은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이 KBS 이사진 전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지, 특히 여기 보면 강규형 이사 자료는 별도로 첨부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무슨 표적이 특정 이사다 이런 인상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KBS 자체도 왜 휴일 또 집 부근에서 또는 도서, 서적 구입, 음료 사용은 위반이다 이런 것을 왜 제대로 안내하지 못해서 많은 이사들이 이런 부분들에 용도로 쓴 것이 나타납니다. 이런 것은 본인 잘못도 물론 있지만 회사 책임도 물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방송사 이사진 법인카드만 따로 떼서 감사원이 뒤진 것은 유례가 없는 표적감사라는 비판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특히 감사가 이루어진 배경을 보면 언론노조 KBS본부가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처럼 특정 임의단체인 이런 특정세력, 노조가 청구했다고 국가기관이 다 감사를 받아준다, 이렇게 되면 너무 이례적으로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감사원이 소위 민주당이 이른바 방송장악 시나리오 문건대로 거기에 따라서 하명감사, 청부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일부 야당의 비판을 받고 있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공영방송 MBC의 경우에도 사장을 해임시키고 이사장을 또 해임시키고 이제는 이사직까지 해임하려는 것입니다. 특히 지난주에는 MBC 대대적인 압수수색이 검찰이 실시해서 12시간 가까이 이례적으로 압수수색을 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공영방송 사장 해임 또 이사진 개편 이것이 국가 권력기관이 줄줄이 개입하고 있다는 인상을 줍니다. 그래서 노동부와 검찰, 감사원이 다 동원됐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이렇게 MBC에서 KBS마저도 이사진 교체, 사장 해임 이런 것이 계속 간다면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이 아니라고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과거 정권의 코드를 맞춘 공영방송 적폐를 청산한다면 물론 청산해야지요. 하지만 이것이 국가 권력을 계속 사용한 다면 적폐청산에 새로운 적폐가 쌓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권력의 힘으로 공영방송이 새로 개편됐다고 해도 그 공권력과 정권, 또 정치권력으로부터 방송의 독립성을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저는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공영방송 개혁을 국가 권력으로 이루어 내려고 하는 그 자체가 방송의 독립성을 해치는 것이고 정권과 한편이 돼서 공영방송이 이렇게 간다면 어떻게 방송이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언론의 고유책무를 다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감사원의 KBS 이사 해임 건의가 방통위에 들어와 있습니다. 저는 결코 이것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 이효성 위원장

-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저는 발언을 안 하려고 했는데 김석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의 생각을 아무래도 말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앞서 김석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감사원이 인지한 것도 아니고 또 제가 알기로는 다른 데서 요청해서 감사가 이루어진 것도 아닙니다. 정부기관에서 요청해서 감사가 이루어진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김석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KBS 노조에서 KBS 이사들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그 자료를 가지고서 구체적으로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그러한 감사 청구에 대해 감사원이 거부한다는 것이 오히려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에서 지적하는 청부감사다, 하명감사다 이것은 정말 근거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어느 위원님도 감사원에 대해 이번 감사와 관련해서 의견을 드린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권력을 통해서 공영방송을 장악한다, 이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단적인 예로 이번 감사원의 조치요구를 보면 회계 질서를 문란케 한 이사장, 이사 전원에 대해 해임 건의 및 연임 배제 건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과거의 표현으로 하면 여측, 야측 추천이사, 즉 다수 측이나 소수 측이나 어떤 대상을 특정해서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적 이용이라고 하는데 이번 감사원의 발표결과를 보면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집행해서는 안 되는 금지대상에서 집행된 사용내역이 있는 것, 명확하게 그것은 집행 금지대상으로 분류해 놓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사적 사용 의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사적 사용 의심도 어디에 사용했는지 설명을 제대로 못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감사결과가 나와 있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준조세나 다를 바 없는 KBS의 예산입니다. 그래서 감사원이 지적한 것 아닙니까? 회계질서를 문란케 한 이사장과 이사 전원에 대해 해임 건의 그리고 연임 배제하는 그러한 건의를 해서 인사 조치를 하라는 것입니다. 정치적 논리를 개입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는 감사원에서 감사결과 조치요구를 한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치를 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것이 문제가 되는 사안이라는 것은 아마 김석진 위원님께서 너무 잘 아실 것입니다. 저는 법과 원칙대로 이 사안은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표철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표철수 상임위원

- 최근 일련의 사안들과 관련해서 존경하는 김석진 위원님께서 항상 마음이 무거워서 저도 같이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런데, 방금 거론된 사안과 관련해서는 이것은 정치권의 정치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는 그 실행 과정 자체를 문제 삼을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정부기구가 고유직무를 행사했다는 점은 방송통신위원회도 그런 일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부터 근본적으로 부정하면 여러 가지 무리가 따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원이 어쨌든 이런 감사결과를 내놓고 방송통신위원회에 권고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것이 오히려 좋겠다, 김석진 위원님께서 그렇게 우려하시는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만 이것은 사안을 보다 더 면밀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도 공적인 기관에서 법인카드를 임원들이 행사함에 있어서 1원 한 푼도 사적인 용도나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건은 감사원이 감사해서 통보해 준 결과에 따르면 액수의 다과가 있습니다. 개인차가 있는데, 그러나 원칙적으로 모든 사람에 대해서 감사원이 이야기한 2가지 방안을 다 적용할 필요가 있다, 거기에서 예외가 있어서 안 된다는 원칙적인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문제를 감사원에서 그렇게 요청해 왔기 때문에 정리해야 합니다. 그 사이 오랜 기간 2개의 제일 큰 공영방송사가 비정상적인 형태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이른바 시청자 권익이 심대하게 침해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은 원칙적으로 빨리 정돈을 해야 한다, 곧 있으면 새해를 맞고 또 내년 2월에 평창 동계올림픽도 열리는데 이런 문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직무행위를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정돈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의 감사가 적절했느냐, 적절하지 않았느냐의 문제를 논하기보다 이 문제가 일단 적시가 됐고 그와 같은 사실이 밝혀졌으면 감사원의 기능에서 밝혀진 것을 저희들이 부정하는 것은 전혀 적절치 않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건의 처리방향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허 욱 부위원장

- 굉장히 어려운 숙제가 던져진 것 같습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일부 이사들은 그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 몇 만원, 몇 십 만원 정도 되는 사안들까지도 문제를 삼아야 되느냐는 평가와 시각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KBS 이사들이 쓴 법인카드 업무추진비는 이것이 사실상 최근 언론보도에서 계속 문제제기되는 특수활동비가 아니라는 일종의 경각심을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부와 공공기관의, 즉 공직사회 전반에 걸쳐 업무추진비를 어떻게 쓰라는 일종의 경종을 울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한 것인지, 그리고 감사원에서 지적한 조치사항에 관해서 보다 더 심도 있고 깊이 있게 결론을 내리는 것이 방통위와 KBS뿐만 아니라 공직사회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사안이라고 보고, 따라서 보다 더 스스로를 돌아보는 자세로 이 문제를 좀 더 깊이 있고 보다 더 다각적으로 함께 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제가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표 위원님께서 표현을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쟁점으로 논쟁을 해야 할 사안이 있고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명확한 사안들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명확한 사안은 우리가 정치 쟁점화 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KBS 이사들에게 지원되는 자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번에 문제된 업추비 카드로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가 있고 그다음에 별도로 자료조사비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자료조사비가 특수활동비 성격입니다. 영수증 필요 없는 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일절 이번에 조사를 한 것이 아닙니다. 이번에 조사했던 것은 법인카드로 사용하는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러면 그 업무

추진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대로만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핸드폰을 구입하고 또 태블릿PC를 사고 또 어떤 분들은 애견용품을 사고 저도 사실은 이런 것들을 언급하기가 뭐라고 할까요, 입에 올리기도 그렇습니다.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 중에서 업무추진비 카드로 사적인 용품 구입에 쓰신 것 있으십니까? 저는 식사하고 차 마시는 것 외에는 지금까지 업무추진비로 결제를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집 근처에서 사용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기본입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지난 10년 동안 공영방송 이사를 하고 계신 분들께서 어떠한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서 활동을 했는지 분명히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은 정치 쟁점화 할 것이 아닙니다. 감사원에서 감사결과로 분명히 정리해 주었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처분할지 그 부분만 논의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이효성 위원장

- 김석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석진 상임위원

- 논쟁이 길어지니까 저도 꼭 필요한 말만 하겠습니다. 이것이 KBS 이사로 선임되신 분들은 이사장을 포함해서 이사들이 그래도 다 덕망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훌륭하신 분들을 우리가 추천해서 대통령께서 임명하셨습니다. 그런 분들을 사적인 용도 집 부근에 썼다, 그것은 정확하게 기재하지 못하고 의심되는 이런 것이 보도자료에 나가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개인에 대한 엄청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인호 이사장이 오늘 감사원에 서면으로 답변서를 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잠깐 보면 중계차 직원들 격려했던 회식이 있고 또 모 신문사, 신문사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간부들과 회식한 것, 간담회 가진 것 또 이사회 사무국 직원들 연말 오찬 다 이런 것입니다. 이런 것이 전혀 소명이 사적으로 썼다고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이사장이 이런 해명서를 내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일단 방통위로 넘어왔으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면밀하게 보고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제가 논쟁을 길게 이어가는 것 원치 않고, 하여튼 다음에 어차피 안건으로 올라올 것이니까 위원님들 엄중하게 잘 들여다보시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효성 위원장

- 표철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표철수 상임위원

-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방문진 이사장이 면직된 데 이어서 방문진 고영주 이사에 대한 해임 건의가 올라온 사안도 저희들이 처음 사례가 되는 것, 선례가 되는 것은 항상 신중하고 신중하고 또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드린 바 있습니다. 물론 이 사안도 이런 전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신중하게 처리해야 하는데 김석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사안은 면밀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이 감사를 해서 결과를 내놓았기 때문에 당사자들 이번에 해당되신 이사들 전원의 의견을 들어서 판단할 문제다, 그 의견도 듣고 감사원 감사결과도 보고 저희들 방송통신위원회 차원에서 또 별도로 이 문제를 충분히 들여다봐야 한다, 그렇게 해서 이 문제는

처리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이것 역시 선례로 앞으로 기록에 남을 것이기 때문에 방송통신 위원회가 어떤 결과를 도출하더라도 향후 특히 방송사와 관련된 불행한 일들을 사전에 막아야 한다, 큰 틀에서 이 문제들을 처리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효성 위원장

- 이렇게 하시지요. 저희가 KBS 이사님들에 대해서는 감사권이냐 검사권이 없기 때문에 별도로 조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그런 것을 나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월권이고, 다만 신중을 기하고 그분들에게 소명의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아홉 분 모두에서 적정한 시간 까지 소명의 기회를 한번 주고 저희가 그 소명 내용을 보고 나서 저희가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의결하는 것으로 하고, 그 절차에 관해서는 저에게 맡겨 주시면 제가 아홉 분 모두에게 소명의 기회를 언제까지 기한을 정해서 하도록 하고 그것을 나중에 보시고 논의하시지요.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방문진 전 이사장인 고영주 이사장께서 청문을 요청했기 때문에 저희가 청문을 개최해야 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관해서 의견 있으면 그것도 의견을 주시지요.

○ 표철수 상임위원

- 그것은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충분한 열흘 이상 기한을 주고 당사자가 청문에 응해서 해명을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맞고, 단지 적절한 날짜를 잡아서 처리를 하는데 거둬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이 신중하게 처리하기 위한 절차 중 하나니까 날짜만 협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기 때 모 종편 재승인 불허 관련 청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청문은 안건 올리기 전 단계로서 사무처에서 주관해서 진행했습니다. 이번 건도 저희들이 최종 의결할 때는 위원님들과 사전 논의 그리고 전체회의에서 논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3기 때 했던 사례를 보면 그 청문절차까지는 아무래도 위원장님께서 사무처로 하여금 준비해서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행정절차법에 따른 절차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처에서 준비를 잘해서 본인의 소명을 충분히 듣고 판단을 신중하게 하기를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 허 욱 부위원장

-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문 주재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 그리고 본인이 편한 날짜가 어떤지를 정해서 만약에 청문 주재자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면 본인도 기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포함해서 사무처에서 여러 가지를 적절히 잘 판단해서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 위임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 이효성 위원장

- 표철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표철수 상임위원

- 위원장님 청문할 때는 방통위원들이 다 참여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왜냐하면 들어야 논의를 하기 때문에, 아까 제가 날짜를 말씀드리는 것은 방통위원들 공적인 직무와 관련해서 날짜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정해 주십사 하는 뜻입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잠깐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문에 들어간다는 것이 참관이 있고 직접 개입한다는 부분이 있는데 행정절차법상 청문에 관여할 수 있는 범위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세세한 부분들을 여기에서 논의하기보다는 위원장님께 위임을 해서 사무처와 함께 진행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그러시지요.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까?

○ 고삼석 상임위원

- 그것은 좀 더 판단해 봐야 합니다.

○ 허 욱 부위원장

- 공개 여부는 본인이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그러면 사무처에서 청문절차에 관해 준비해 주시고, 청문 주관하실 분이나 참석인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저와 상의해 주시지요.

○ 조경식 사무처장

- 예, 알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그러면 더 이상 논의하실 것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회의는 12월 6일 오전 9시 30분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 폐 회

○ 이효성 위원장

- 이상으로 2017년 제41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6시 20분 폐회】